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市民保社委員會〉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민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현안 문제점을 사전 도출시켜 시정토록 하고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행정통제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1992. 11. 26(금) ~ 11. 28(토)까지 (3일간)

3. 감사실시 대상기관

가. 시민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나.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과, 보건지도과

4. 감사실시경과

가. 감사반의 편성

감사반장	간 사	감 사 위 원	사무보조직원
이 강 위	윤 태 봉	김진국, 김형수, 우일현, 조연체, 최락희, 최준화	지방행정서기 서만원, 구기모 속기사 정미연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기관	감 사 장 소	감 사 방 법
11. 26(목) 09:00~18:00	• 시 민 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영등포구청 3층 문화공보실	질의, 답변 서류 및 현장확인
11. 27(금) 09:00~20:00	• 시 민 국 환경과, 청소과 • 보 건 소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	〃
11. 28(토) 09:00~15:00	• 시 민 국 • 보 건 소	〃	〃

4. 주요감사실시내용

가. 시민국

소 관 과	실 시 내 용
각 실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 각종 세출예산 추산부 정리실태 ○ 각종 민원처리 실태 ○ 구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새마을 노임사업 ○ 장애자 복지 ○ 직업안정 및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 구인, 구직 수요조사 및 취업알선 ○ 유아교육사업 ○ 가정의례업소 인·허가 및 지도감독 ○ 소관법인 및 시설 인·허가 지도감독 ○ 요보호아동예방 및 수용보호 선도사업 ○ 불우청소년 및 소년가장 보호사업 ○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제외)허가 및 지도단속 ○ 식품위생업소(제조업소제외)의 위생감찰 ○ 숙박업소, 목욕장업소, 이미용업소, 유기장(생활체육과 관장시설업소, 세탁업소, 위생관리용역업소, 위생처리수리제조업소, 세척제제조업소,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소, 장난감제조업소 및 식품제조업소의 허가(신고) 및 감독 ○ 부정식품 단속 ○ 영업시간위반, 퇴폐, 변태, 무허가업소등 감시단속
위 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등록과 실태조사 ○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 ○ 가격표시제 및 고정거래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및 연료사용기기 안전관리지도 ○ 도시가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산 업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해에 관한 지도 및 단속 ○ 공해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 기타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체납관리(납기경과 1개월후) ○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 처리장 관리 및 복토 ○ 정화조의 유지관리 ○ 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공처리(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 제외)
청소과	

소 관 과	설 시 내 용
보 건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회계, 물품관리에 관한사항 ○ 진료업무 및 민원실의 운영 ○ 방역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주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계몽에 관한 사항 ○ 정신보건, 노인보건에 관한 사항 ○ 의료기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약품관리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 ○ 병리검사업무에 관한 사항 ○ 방사선 병리검사의 장비, 시약등에 관한사항 ○ 무료 순회 진료에 관한 사항

6. 검사결과 및 처리의견

가. 시민국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각 실 과	<p>제 목: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 (현황 및 문제점)</p> <p>'92년도 각과에 예산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과를 제외하고는 '92년도 예산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충분한 심의 및 검토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됨.</p> <p>(조치사항)</p> <p>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함에 있어 사업에 타당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의 비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할 것</p>
각 실 과	<p>제 목: 각종 세출예산 추산부 정리실태 (현황 및 문제점)</p> <p>각 실과에서는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추산부를 정리하고 있으나 세출 예산의 계수의 적정여부를 떠나서 장부 기입시 연필로 낙서하듯 정리하거나 또는 기입이 매우 난잡하는 등 세출 예산장부 정리자체가 매우 불성실함.</p> <p>(조치사항)</p> <p>세출예산 추산부 장부 정리를 함에 있어서 일목 요연하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장부 정리에 철저를 기할것.</p>

소관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각 실과	<p>제 목: 각종 민원처리 실태 (현황 및 문제점)</p> <p>각 과에서는 각종 인·허가 업무등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법정 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있음 (조치사항)</p> <p>향후 각종 인·허가 업무등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법정기일내에 처리하여 민원인을 야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시정 조치할 것.</p>
사회복지과	<p>제 목: 보훈단체에 대한 격려품 지원 실태 (현황 및 문제점)</p> <p>우리구 관내 보훈단체 현황을 보면 상이군경회(553명), 전몰 군경 유족회(350명), 전몰미망인회(420명) 및 무공 수훈자회(656명)가 있으나,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92.6.15 구청에서 보훈단체에 대하여 격려품으로 1인당 13,600원 상당 수산물 세트(김1속과 마른멸치 kg)을 365명에 지원하였으나, 지금 격려품 중 상당수가 부패되어 먹을 수 없어 지원의 의미가 없어짐. (조치사항)</p> <p>보훈대상자에게 격려품을 지급함에 있어 격려품목 선정에 엄정을 기하여 계절에 맞게 또는 수혜자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양질의 품목으로 지급 할것</p>
사회복지과	<p>제 목: 장애자 직업안정에 관한 실태 (현황 및 문제점)</p> <p>금년도 직업안정을 위해 남자 476명, 여자 319명을 취업알선하고 실제 취업된 사람은 남자 130명, 여자 136명 총 266명이나 되나 장애자 취업알선 및 취업은 한건도 없다는 것은 복지사회 구현의 국가 시책이나 복지 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봄. (조치사항)</p> <p>'93년도에는 장애자 구직(취업)희망자를 파악 알선 및 취업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p> <p>제 목: 장의용품 협정요금 운영 (현황 및 문제점)</p> <p>서울특별시 고시 제168호('81.5.12)에 의거 장의용품 이용료를 병풍임대 및 염습실 수수료등 30여가지 장의용품 대여 및 사용에 대하여 최고 한도를 정하여 약38만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담하는 장의용품 이용대금은 약120만원~150만원 정도에 이용시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p>(조치사항)</p> <p>장의용품 대여업에 대하여 수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협정 요금 위반업자에 대하여는 엄정 의법조치하여, 협정요금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강력 시정조치 할 것.</p>
가정복지과	<p>제 목 : 예식장 이용 협정 요금운영 실태 (현황 및 문제점)</p> <p>현재 예식장 이용 협정요금 운영 실태를 보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168호('81. 5.12)에 의하여 예식장 임대료중 좌석 이용료는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으나, 사진 및 스냅사진(앨범포함) 수수료는 협정요금이 최고 36,000원인데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30~50만원으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드레스 대여요금은 고시가격이 최고 20만원으로 되어 있고 미용요금은 5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용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드레스는 최하 70만~150만원 미용요금은 2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 협정 요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용시민에게 큰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p> <p>(조치사항)</p> <p>향후 예식장 임대료 및 수수료등에 대하여 수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협정요금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p>
위 생 과	<p>제 목 : 위법식품제조업에 대한 지도 감독 (현황 및 문제점)</p> <p>관내의 흑염소 또는 개소주등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업소의 가공과정을 살펴보면 허가품목이 밤, 대추등 5~6가지에 이르나, 허가품목외 한약제로써 전문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취급해야 할 당귀, 작약 같은 한약제를 무자격인 건강식품 가공업자가 취급함으로써 잘못하면 건강에 큰위험이 있으나, 단속이 매우 미비한 실정임.</p> <p>(조치사항)</p> <p>위법식품가공업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거 엄정의법조치하고, 수시 행정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하여 위법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할것.</p>
산 업 과	<p>제 목 : 위생업소에 대한 물가지도 및 가격표시 실태 (현황 및 문제점)</p> <p>관내 위생업소중 대부분 대중식당에서 육류를 판매함에 있어서 1인분 10,000원등으로 표시를 하고, 1인분이 몇g이 정량인지 표시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어 이용하는 시민을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많은 폭리로 공정거래를 크게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p>

소 관 과	시 정 및 처 리 요 구 사 항
산 업 과	(시정조치사항) 유류를 취급하는 대중식당에 대하여 정확한 정량표시 및 저울비치 등으로 공정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위생지도 및 행정조치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산 업 과	제 목 : 무허가 공장에 대한 지도감독 (현황 및 문제점) 관내 주거지 내에 무허가 공장이 산재하고 있어, 주민생활환경을 크게 해치며, 또한 적치물 방치등으로 인해 도로교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관청에서는 법규의 미비점 이유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는 방관적인 자세로 인하여 주거환경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임. (조치사항) 허가요건에 적합치 않는 무허가 공장이라도 행정지도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며, 미비한 관계 법령은 보완 개선하여 실질적인 단속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정할 것.
산 업 과	제 목 : 도시가스설치 지원자금 (현황 및 문제점)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도시가스설치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92년도 예산편성시 도시가스설치 지원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관련 기관인 상업은행과 도시가스회사 및 구청의 유기적 업무체계가 즉시 이뤄지지 않아 '92년 11월 현재 단 한 건도 용자금 지원한 실적이 없는 바, 이는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도 시행 과정에서 적시에 시행을 하지 못해 실효를 거두고 있지못함. (조치사항) 향후 이러한 정책을 입안 하였을 때는 그 계획 및 시행과정에 있어 유관기관과의 적절한 협조가 이뤄지도록 할 것.
환경 과	제 목 : 폐수위탁 처리 실태 현황 (현황 및 문제점) 관내 환경오염 폐수업체(사진업, 도금업 및 병원등)에서 배출되는 폐수 처리에 있어서 폐수발생업체가 수탁업체를 지정하여 폐수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는 수탁업체를 지정하였으나, 폐수발생업체에서 수탁업체에 처리비만 납부하고 실질적으로 수탁업체에서 처리하지 않고 폐수를 방류를 시키고 있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실정임.

소관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환경과	<p>(조치사항)</p> <p>범세계적으로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할 때, 이러한 환경오염 주범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등 강력한 행정제재 및 단속을 할 것.</p>
청소과	<p>제 목: 쓰레기 수거료 이중부담 실태 (현황 및 문제점)</p> <p>각 가정의 쓰레기 수거에 대한 수거료를 매월 공과금 납부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있으나, 담당 환경 미화원이 매월 각 가정을 순회하며 개별적으로 수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근절되지 않는 실정임.</p> <p>(조치사항)</p> <p>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정당한 납부고지서외에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시정조치 할 것.</p>
청소과	<p>제 목: 영동포구 청소 대행업체의 횡포 (현황 및 문제점)</p> <p>현재 경청산업의 8개 청소대행업체가 구 관내 6개동을 전담하여 소규모 영세시장 및 일반가정의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으나, 지정된 쓰레기 수거 수수료외 별도의 수고료를 요구하여 주민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p> <p>(시정조치요구사항)</p> <p>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대행업체의 철저한 지도 감독 및 관리를 통한 현재의 부당한 횡포가 근절 되도록 즉시 시정 조치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 대행업 취소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것.</p>
청소과	<p>제 목: 병, 의원 생활쓰레기 처리 및 감독 실태 (현황 및 문제점)</p> <p>병, 의원 쓰레기는 적출물과 생활 쓰레기를 구분하여 적출물은 특수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나 생활 쓰레기는 환경미화원에 의해 일반 가정쓰레기와 함께 매립장으로 이송 처리되고 있는바, 환경미화원 조장, 미화원, 운전자에 의해 사전출입방지 장치가 되고있고, 매립장에서 최종 감시업무가 행하여지고 있으나 그 특성상 병원 적출물이 불법 혼입될 우려가 다분함.</p> <p>(조치사항)</p> <p>병원 적출물은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당장 지역주민의 보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처리에 있어 보다 철저한 감시 및 감독을 요함.</p>
청소과	<p>제 목: 정화조 과태료 부과 실태 (현황 및 문제점)</p> <p>가정용 정화조 청소는 년1회 걸쳐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위반한 가정에 대하여는 '88년 제정한 서울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p>

소관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청소과	<p>과태료를 부과하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치 않고 있다가 '91.12.11 서울시 지시에 의하여 '92.10.15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체납과태료 징수과정에 있어서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3회이상 발부하고 있으나 체납자에게 전달되지 않은 사례가 많으며 마지막 독촉장을 받은 일자가 미경과에도 불구하고 체납고지서를 발부하는 모순된 행정을 하는 사례가 있었음.</p> <p>(조치사항)</p> <p>독촉장 전달에 있어서 체납자에게 확실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체납과태료 징수 절차의 모순을 즉시 시정할 것이며, 불합리한 과태료 납부자에 대하여는 청문절차 등을 통하여 구제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관계법령 제정시에 즉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p>
보건소	<p>제 목 : 각동 순회 진료실태</p> <p>(현황 및 문제점)</p> <p>현재 보건소에서 22개동 저소득층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순회 진료를 하고 있으나, 순회일정에 대하여 각동사무소에 사전 홍보하도록 시달하고 있으나, 해당 동사무소에서 홍보부족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및 노인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는 좋은 제도가 있으나 홍보부족 등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실정임.</p> <p>(조치사항)</p> <p>향후 순회진료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일정을 작성함은 물론 특히 각 동장은 반상회 및 각종 간담회 또는 통장을 통하여 순회 진료일정 및 장소에 대한 사전홍보를 철저히하여 많은 어려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할 것.</p>

7. 건의사항

가. 시민국

소관과	실시내용
각실과	<p>제 목 : 수감자료 실태</p> <p>(현황 및 건의사항)</p> <p>시민국, 보건소 소관 실,과에 대하여 수감시 각실,과의 수감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특히 보건소의 수감자료 및 준비 상태가 매우 악화하여 타 실,과의 모범이 되는바, 향후 타 실,과에서 수감시 사전에 충분한 자료의 준비로 수감에 임하여 줄 것을 요망</p>

소 관 과	실 시 내 용
사회복지과	<p>제 목 : 사회복지행정 운영 실태 (현 황)</p> <p>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복지사회를 구현코자 정부차원의 많은 노력이 있으나 현재 각종 사회복지단체중 보훈단체 등은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단체 등은 사회복지 시설의 부족 또는 위문 및 지원계획 미흡으로 인하여 다소 지원이 소홀하다 생각되며,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자, 부랑인 단속, 취로사업 지도감독등 구정의 그늘진 곳에서 말없이 책임을 다하는 사회복지 및 가정복지과에서 근무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p> <p>(전의사항)</p> <p>충분한 예산지원 및 일선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등 적극적인 자세로 내실있는 복지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p>
사회복지과	<p>제 목 : 취로노임사업 관리실태 (현황 및 문제점)</p> <p>취로사업 관리 실태를 살펴본 바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으나 취로사업 관리하는 업무에 관한 서류가 너무 많아(6종류) 공무원의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있다고 보며 노임지불 장부등 기장 방법이 분기별로 작성되어 있어 매우 불편하고 작업일수는 월별로 고르게 편성이 되어있지 않음.</p> <p>(조치사항)</p> <p>취로사업 장부 기장을 월별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연구 할 것이며 취로사업은 가급적 월별로 고르게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임.</p>
사회복지과	<p>제 목 : 불우이웃돕기 지원 현황 (현황 및 문제점)</p> <p>관내 소년·소녀 가장등 어려운 불우이웃에 대하여 생계지원을 위해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91년도에는 17명에게 지원을 하고 '92년도에는 23명에 그친 바 있어 아직도 주변에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이 많은 실정을 감안할 때 지원이 부족한 실태임.</p> <p>(전의사항)</p> <p>향후 불우이웃돕기 지원에 있어서 더욱 더 많은 불우이웃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불우이웃돕기 지원의 확대 대책을 강구할 것.</p>

소 관 과	실 시 내 용
사회복지과	<p>제 목 : 사회복지과 노정계직원 근무상황 (현황 및 문제점)</p> <p>사회복지과 노정계에는 현재 계장1명, 직원2명 총 3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관내에 노동조합이 설립신고한 회사수가 많고(136개소) 또한 사회 복지차원에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소에 대한 지원등을 하는 업무여건을 감안 할때 직원수가 부족한 실정임.</p> <p>(건의사항)</p> <p>노정계 업무여건을 감안하여 직원 증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의 조치하고 노정업무 담당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노정업무에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p>
가정복지과	<p>제 목 : 시립독서실 운영실태 (현황 및 문제점)</p> <p>청소년의 면학분위기 및 정서함양을 위해 관내에 시립독서실이 4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지원내역을 보면 월 42,000원의 공공요금과 월동비 약 50만원정도의 미비한 지원으로 인하여 열악한 환경으로, 근무직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으며 또한 주변에 불량청소년들의 상주로 우범 지역화 되는 경향이 있어 원래 설치 목적만큼 충분히 이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임.</p> <p>(건의사항)</p> <p>시립 독서실에 대한 지원 방안과 직원 근무사기 양양책등 독서실 본래 설치목적을 충분히 거둘 수 있도록 상급행정 기관에 건의하여 조치할 것.</p>
위 생 과	<p>제 목 : 위생과 인·허가 처리실태 (현황 및 문제점)</p> <p>인·허가업무가 많은 위생과에서 대부분의 업무를 협회등에 의존하여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인·허가 신청시 절차 및 행정처리에 복잡함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p> <p>(건의사항)</p> <p>위생과 근무인원의 증원등을 검토하여 각종 인·허가 업무를 위생과에서 직접 처리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여 개선토록 할 것.</p>

소 관 과	실 시 내 용
산 업 과	<p>제 목: 허가관련 부서 법규적용에 관하여 (현황 및 문제점)</p> <p>대림3동 주유소 허가 신청에 있어서 허가요건의 부당을 이유로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허가 신청을 반려하였으나, 허가 신청자 측에서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소에 제소한 결과 구청에서 패소하여 주유소 허가를 해 준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행정을 함에 있어 법률 만능주의에 입각하여 행정을 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에 관한 집단을 전혀 무시한 사례라 하겠음.</p> <p>(건의사항)</p> <p>허가 관련 부서에는 허가시 관련 법규의 적용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지역주민의 불편에 관한 집단민원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비미한 법규는 개선토록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p>
환경과	<p>제 목: 공배배출 허용기준의 문제점 (현황 및 문제점)</p> <p>공해배출업소에서 배출되는 폐수허용기준을 배출량의 관계없이 배출 농도에만 적용하는 「배출허용 기준」은 다량의 물등으로 회석 방류할 수 있는 큰 헛점을 내포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공해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설정임.</p> <p>(건의사항)</p> <p>현행법상 비록 적용할 법적근거가 없어 단속하기가 어렵다고 하나, 이미 지방자치화 시대에 들어선 지금 우리구 관내에서 만이라도 공해배출 허용 기준을 「총량 배출기준」으로 적용하여 감독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모색하기 바람.</p>
보 건 소	<p>제 목: 에이즈(AIDS) 확산 방지를 위한 혈청검사 효율성제고 (현황 및 문제점)</p> <p>'92년 10월 말 현재 에이즈 혈청검사를 12,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으나 이환률이 확산 일로에 있는데도 이 병자체가 특수한 대중 혐오성 질환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으로 인해 그 검사 조차 두려워하고 있어 혈청검사 기피현상은 보건행정의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p> <p>(건의사항)</p>

소 관 과	실 시 내 용
보 건 소	<p>보건소라는 관청의 딱딱한 분위기보다 관내 편리한 곳(예 : 역구내 등)에 휴게소 성격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한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며 혈청검사 기기를 갖추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p>
보 건 소	<p>제 목 : 보건증 발급실태 (현황 및 문제점)</p> <p>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보건증 발급업무를 보면 관내 지정기관 5개소를 정해 검사후 보건증을 발부하고 있으나, 5개 병원 주무담당자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조사한 바, 검사과정에서 형식적인 검사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실정임.</p> <p>(전의사항)</p> <p>보건소 진료 인원의 증원과 검사의료기기 구입 예산을 편성하여 검사기기등을 보건소에서 구입해 정확히 검진후 보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p>

7. 기타 특기사항

제목 : 관내 폐수 및 오수처리 실태 현장 확인

1. 확인 현황 및 결과

확인일시	확인업체	소재지	확인자 및 입회자	확인결과
92.11.27 16:00	OB맥주공장	영1동	윤태봉의원 조연제의원 김형수의원 (시민국장, 환경 지도계장 입회)	대상업체를 불시 방문 수질검사용 시료 4ℓ/ btl, 보관용 1ℓ/btl 채취 하고, 현장자동측정계 로 확인한 결과 수질 오염도가 기준치 이하 로 양호한 편임.
92.11.27 16:50	크라운맥주 공장	"	"	"
92.11.27 17:10	미원공장	대림3동	"	"
92.11.28 10:23	방림방적	문래1동	" (시민국장, 생활 공해계장입회)	대상업체를 불시 방문 수질검사용 시료 4ℓ/ btl, 보관용 1ℓ/btl 채취 하여, 서울시 보건 환 경연구원에 의뢰 확인 한 바 수질오염도가 기준치 이하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됨.
92.11.28 11:00	롯데제과	양평2동	"	"

2. 현장답사소감

현장답사를 실시한 5개업소 모두가 국내 유수기업체로서 공해방지시설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범업체라 할 수 있음에도 굳이 이를 업체를 점검대상으로 택한 것은 단속 적발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제도 차원에서 환경 관련 업체 뿐만 아니라 전 구민의 환경공해에 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비교적 큰 업체에서부터 공해방지에 앞장서 줄 것을 바라는 마음과 향후 해당부서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도 보다 큰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감시를 하고 있음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다소나마 공해 방지 대책에 기여하고자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그 목적 달성에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기대함.